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복지공제회 사업 및 재원 추가 〉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887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사회복지공제회 사업 및 재원 추가	3

I. 개요

1.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88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명구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1. 4.

(3) 회 부 일 : 2025. 11.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회원을 위한 공제급여 사업, 복지·후생 사업 등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소방·교직원 등의 공제회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경우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사회복지사 등은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위하여 헌신하는바, 경찰·소방 공무원에 못지 않게 공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과 복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역량 강화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교육·연수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연수 사업을 활발히 실시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공제회 사업 및 재원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추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급한 보조금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 제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③ (생략)	제6조(사업)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사회복지사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u> 6. ----- <u>제5호</u>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u>재원</u>)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u>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u>	제7조(<u>재원 및 비용보조</u>) ① ----- ----- ----- ----- ----- <u><단서 삭제></u>

현행	개정안
<u>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1. (생략) <u><신설></u> 2. <u>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u> 외의 자의 출연금 3. · 4.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u>1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u> 2.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u>----- 3. · 4. (현행과 같음) <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1항제1호의 2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11년 설립된 법인으로, 2025년 7월 기준 자산 6천억원, 회원 5만 4천여명 수준임.¹⁾

공제회의 회원 자격은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 ③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 자격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4조의3(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6조(회원의 자격)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관」

제5조(회원 자격조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종사하는 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7. 공제회 임직원과 공제회의 부설기관·법인 및 사업체의 임원과 직원
8.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공제회의 주요사업²⁾으로는 ① 적립형 공제급여(적금), 목돈수탁급여(예금)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제급여 사업, ②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의 의료비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국고보조사업), ③ 복지시설의 화재·안전사고 배상책임 및 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대 사고 배상책임 공제 등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 공제사업, ④ 담보(공제급여) 대여, 복지급여금(출산·결혼 축하금 및 사망위로금 등) 제공 및 공제회 제휴 시설 할인 등 회원 대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복지 사업 등이 있음.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제회 정관에 따른 주요 사업 현황 >

사업구분	주요사업
공제급여사업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적 노후 및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적립형공제급여·연금, 디딤돌공제급여, 목돈수탁 급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공제사업	정부 지원 단체상해 공제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및 일상생활 중 상해 의료비 보장)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배상책임 등 법률상 의무 가입 책임공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 상품 구성)
대여사업 및 복지·후생사업	회원복지사업 (대여, 복지급여금, 휴양시설 제휴 등)
기금조성사업	공제회관 운영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공제회의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³⁾
-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교육·연수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실무역량 향상과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사회복지사 등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인건비·사업비 등도 공적재원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소방·교직원 공제회 등과 유사한 준공공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특히,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2631-326)’ 사업을 통해 매년 28억원(28만명에 대해 연 2만원 중 1만원 지원)을 공제회에 지원해 왔으나, 현행법에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입법적 정비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 사업으로 28만명 중 17만명에 대해 자부담 1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제1항4)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고,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4)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지도·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제회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교육·연수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사회복지사등의 교육을 위한 국가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등 다른 공제회의 사례⁵⁾를 보더라도, 회원의 교육·연수를 위한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은 제7조의 조 제목을 ‘재원’에서 ‘재원 및 비용보조’로 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의 비용 보조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7조⁶⁾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 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1조(사업)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4.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경찰공제회법」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5.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
2.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3.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제16조의6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4.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단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해당 조항에 비용 보조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정한 비용의 보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조 제목을 ‘재원 및 비용보조’로 개정할 실익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조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재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 목적인 ‘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다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교육·연수 기능을 추가로 수행할 경우, 현행 교육 업무 수행 기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과의 업무 유사·중복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기획예산처) 공제회는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발적 결사체이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회원 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특별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의 규모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재정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될지 가늠할 수 없으므로 별도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교육 연수 사업 및 운영 토대 마련 필요성에 대한 법률 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함. 더불어 교육·후생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 사항을 추가하여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기반 확보와 기능 강화가 필요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은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인재원과 같은 법정단체뿐 아니라 관련 민간 직능단체 등이 수행 중으로, 이들이 기 시행 중인 사회복지사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공제회는 고유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사회복지사 등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일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497